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기획경제위원회]

충청남도
(경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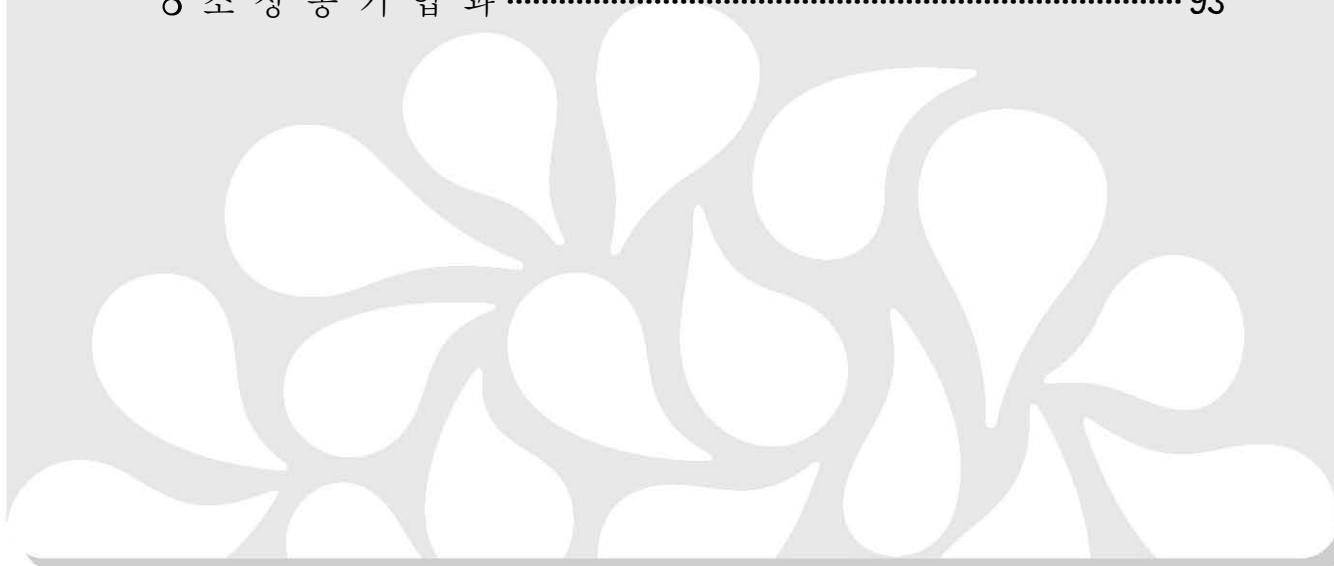
목 차

< 일반 회 계 >

○ 경 제 정 책 과	3
○ 일 자 리 노 동 정 책 과	11
○ 소 상 공 기 업 과	47
○ 투 자 입 지 과	77
○ 국 제 통 상 과	83

< 특 별 회 계 >

○ 소 상 공 기 업 과	93
---------------------	----





일 반 회 계



경 제 정 책 과



경 제 정 책 과

1.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6
2. 상공회의소설립인가 8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충남 양극화 해소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위원회 운영, 대표사업 발굴 및 추진과제 실행력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5,500천원** 【기정액: 25,500천원 + 증: 20,000천원】
 - ※ 증액 사유 : 대표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 정책 자문 수당과 자료 인쇄비 등 지급부족 해결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사 업 량 :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 운영(5회), 전문가 간담회, 정책토론회 및 실무위원회(수시), 지역협약식(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상·하반기 정기회의 및 수시 회의)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 대표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도-시군, 기업,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협약식 개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업명 :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 25,500천원 ○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 운영 : 15,0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100천원×25명×4회 = 10,000천원 · 회의자료 제작 등 인쇄비 30천원×25명×4회 = 3,000천원 · 위원회 운영 제압비 등 500천원×4회 = 2,000천원 ○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 운영: 5,000천원 · 발제자, 토론자 등 수당 190천원×5명×4회 = 3,800천원 · 회의자료 제작 등 인쇄비 300천원 × 4회 = 1,200천원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협약식: 5,500천원 · 협약식 운영 5,500천원 × 1회 = 5,500천원	

	(변경) ■ 사업명 : 충남 양극화 해소 실행계획 및 정책사업 고도화 : 45,500천원 ○ 충남 양극화 해소 위원회 운영 : 23,5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100천원 × 25명 × 5회 = 12,500천원 · 회의 발제수당 200천원 × 10명 × 5회 = 10,000천원 · 회의장소 임차비 100천원 × 5회 = 500천원 · 회의자료 제작 등 인쇄비 100천원 × 5회 = 500천원 ○ 충남 양극화 해소 실무위원회 운영 : 20,500천원 · 회의 참석수당 100천원 × 15명 × 10회 = 15,000천원 · 회의 발제수당 200천원 × 4명 × 5회 = 4,000천원 · 회의장소 임차비 100천원 × 5회 = 500천원 · 회의자료 제작 등 인쇄비 100천원 × 10회 = 1,000천원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 협약식: 1,500천원 · 협약식 운영 1,500천원 × 1회 = 1,500천원	
--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5,500	0	25,500	45,500	20,000	0	신규
도 비	45,500	0	25,500	45,500	20,000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경제정책과	양극화대책팀	송무경 (행) 2210	오세준 (행) 3302	채용병 (행) 3317

상공회의소설립인가	정책사업	지역경제육성
	단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사업	상공회의소설립 인가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상공회의소 설립 인가 업무, 지방 이양에 따른 제반사무 처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2,800천원(균특)
 - ※ 편성 사유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신규 이양사무 수행비용 지원
- 사 업 량 : 상공회의소 관련 사무처리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방일괄이양법」 제19조에 따라 이양된 상공회의소 관련 업무 이행
 - 「상공회의소법」 제6조, 설립 인가
 - 「상공회의소법」 제7조 제2항, 정관변경
 - 「상공회의소법」 제49조 제1항, 개선 요구
 - 「상공회의소법」 제57조 제2항, 과태료 부과
- 지원근거 : (약칭)지방일괄이양법 19조

지방일괄이양법 제19조(「상공회의소법」의 개정)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한다.

(이 하 생 략)

*지방이양사무 지원을 위해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재정지원(행정안전부)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상공회의소설립인가 : 2,800천원 ○ 인쇄물 제작 : 2,000천원 -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 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00	0	0	2,800	2,800	0	신규
국 비	2,800	0	0	2,800	2,800		균특
도 비	0	0	0	0	0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송무경 (행) 2210	신일호 (행) 3301	조용희 (행) 3315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1.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14
2.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8
3.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22
4.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성립전) 26
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성립전) 28
6. 비대면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원 32
7. 노동권익센터 운영 34
8.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36
9.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40
10.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42
11.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 국고 집행잔액 44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설계하고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력수요에 기반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체계구축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64,000천원(국비 498,000, 도비 166,000) 【기정액: 743,000천원 + 감: 79,000천원】
- ※ 감액 사유 : 국비교부결정에 따른 반영
- 사 업 량 : 정기 수요·공급조사 1회, 상시 수요조사 4회, 매월 상시 공급조사, 공동훈련센터 운영지원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지역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를 통해 지역 내 산업에 필요한 훈련기관 발굴 및 인력 양성, 교육훈련 공급계획 수립
- 지원 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743,000천원 (국비 553,000, 도비 190,000) ○ 인건비 : 285,000천원 · 전담인력 : 4,160천원×5명×12개월 = 247,000천원 · 참여인력 : 1,580천원×2명×12개월 = 38,000천원	국비 75% 도비 25%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 : 200,000천원 · 정기수요·공급조사 용역비 : 140,000천원×1식= 140,000천원 · 수시수요조사 용역비 : 60,000천원×1식= 60,000천원 ○ 공동훈련센터 선정(6개 훈련센터) : 29,400천원 · 서류평가, 현장방문 등 : 600천원×7회×7명= 29,400천원 ○ 협의회운영비 : 129,610천원 · 6개 협의회* 회의수당 : 6개×100천원×55명= 32,200천원 · 6개 협의회* 운영비 : 15,770천원×1식= 15,770천원 *본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2, 지역인력양성협의회, 직업계고협의회 · 세미나, 포럼 등 행사비 : 81,640천원×1식= 81,640천원 ○ 일반운영비 : 98,990천원 · 출장여비 : 40천원×5명×5회×12개월= 12,000천원 · 홍보비 등 : 35,300천원×1식= 35,300천원 · 자료인쇄비 : 775천원×1식×12개월= 9,300천원 · 교육훈련비 : 800천원×5명×1식= 4,000천원 · 시설임차비 : 20,380천원×1식= 20,380천원 · 회계감사비 : 1,500천원×1회= 1,500천원 · 일반수용비 : 16,510천원×1식= 16,510천원 (변경 후)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664,000천원 (국비 498,000, 도비 166,000) ○ 인건비 : 284,000천원 · 전담인력 : 4,100천원×5명×12개월= 246,000천원 · 참여인력 : 1,600천원×2명×12개월= 38,000천원 ○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공급조사 : 181,525천원 · 정기수요·공급조사 용역비 : 120,000천원×1식= 120,000천원 · 수시수요조사 용역비 : 48,000천원×1식= 48,000천원 · 전문가 자문단 등 운영비 : 13,525천원×1식= 13,525천원 ○ 공동훈련센터 선정(6개 훈련센터) : 29,400천원 · 서류평가, 현장방문 등 : 600천원×7회×7명= 29,400천원 ○ 협의회운영비 : 93,155천원 · 6개 협의회* 회의수당 : 6개×100천원×44명= 26,800천원 · 6개 협의회* 운영비 : 60,155천원×1식= 60,155천원 *본위원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2, 지역인력양성협의회, 직업계고협의회 · 세미나, 포럼 등 행사비 : 6,200천원×1식= 6,200천원 ○ 일반운영비 : 75,920천원 · 출장여비 : 40천원×5명×5회×12개월= 12,000천원 · 홍보비 등 : 5,600천원×1식= 5,600천원 · 자료인쇄비 : 667천원×1식×12개월= 8,000천원 · 교육훈련비 : 800천원×5명×1식= 4,000천원 · 시설임차비 : 32,820천원×1식= 32,820천원 · 회계감사비 : 1,500천원×1회= 1,500천원 · 일반수용비 : 12,000천원×1식= 12,000천원	국비 75% 도비 2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64,000	0	743,000	664,000	△79,000	0	
국 비	498,000	0	553,000	498,000	△55,000		균특
도 비	166,000	0	190,000	166,000	△24,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 75%,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775,000	775,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승열 (행) 2240	조정원 (행) 3402	박종곤 (행) 224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모델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454,180천원(국비 1,100,000, 도비 354,180) 【기정액 2,466,750천원 + 감 1,012,570천원】
- ※ 감액 사유 : 국비교부결정에 따른 반영
- 사 업 량 : 지역혁신프로젝트(고용노동부 공모사업) 1식 및 지역고용전문관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道와 비영리법인 컨소시엄), 공기관 대행(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사업시행주체 : 비영리 법인(5개 수행기관),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일자리창출·고용촉진 등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추진
 -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 추진
 -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발굴·추진 등을 위한 지역고용전문관 운영 지원(3인 인건비 및 운영비)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307-02)	(당초)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2,289,250천원 ○ (지역혁신프로젝트) 3개 프로젝트(2개 계속사업, 1개 신규사업) 공모 제안 : 2,289,250천원 (변경 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1,266,680천원 (국비 950,000천원, 도비 316,680천원) ○ 프로젝트A 자동차부품산업 위기대응을 위한 고용안정화 지원 : 453,340천원 (국비 340,000천원, 도비 113,340천원) · 자동차산업 기업역량강화(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 293,340천원×1식= 293,340천원 · 일자리사업 발굴 및 역량강화(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160,000천원×1식= 160,000천원 ○ 프로젝트B 기술국산화를 위한 충남지역 특화산업 지원 : 813,340천원 (국비 610,000천원, 도비 203,340천원) · 특화분야 혁신창업 활력제고(충남창조경제센터) : 253,340천원×1식= 253,340천원 · 특구연계 연구소기업 역량강화(한국생산기술연구원) : 320,000천원×1식= 320,000천원 ·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사업(충남경제진흥원) : 240,000천원×1식= 240,000천원	국비 75% 도비 25%
산출 기초 (308-11)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187,500천원 (*당초: 177,500천원) (국비 150,000, 도비 37,500) [(지역고용전문관 운영)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 전담인력 : 3,500천원×3명×12개월= 126,600천원 ○ 협의회 운영비 : 18,600천원 · 협의회* 업무추진비 : 11,000천원×1식= 11,000천원 · 협의회* 회의수당 : 2개×210천원(강의료, 원고료를 포함한 평균단가)×13명= 5,500천원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 협의회,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 2,100천원×1식= 2,100천원 ○ 운영비 : 42,300천원 (당초 : 32,300천원) · 시설임차비 : 9,100천원×1식= 9,100천원 (*당초: 4,100천원) · 자료인쇄비 : 850천원×12개월= 10,200천원 · 홍보비 등 : 8,000천원×1식= 8,000천원 (*당초: 3,000천원) · 교육훈련비 : 800천원×3명×1식= 2,400천원 · 출장여비 : 40천원×3명×42일= 5,000천원 · 일반수용비 : 6,900천원×1식= 6,900천원 · 회계감사비 : 700천원×1회= 700천원	국비 80% 도비 2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54,180	0	2,466,750	1,454,180	△1,012,570	0	
국 비	1,100,000		1,863,400	1,100,000	△763,400		균특
도 비	354,180		603,350	354,180	△249,170		
시군비	0				0		
기 타	0				0		

* : 75%,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525,850	2,525,85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승열 (행) 2240	조정원 (행) 3402	박종곤 (행) 2242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운영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주요 고용·노동서비스 제공기관의 통합을 통한 총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일자리사업 설계(연구·기획)부터 실행·평가의 유기적 연계 등 기능강화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업무효율성 증진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20,299천원(도비) 【기정액: 1,485,817천원 + 감: 265,518천원】
※ 감액 사유 : 2020회계연도 출연금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제잉여금(265,518천원)을 반영하여 출연금 예산액 감액
- 사 업 량 : 충남일자리진흥원 1개소 운영(1원장, 1실<4팀, 1센터>, 1사무국)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지역특성 맞춤형 일자리사업 기획·조정 및 미래형 일자리 사업 발굴
 - 고용·노동시장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한 고용정책 개발연구와 컨설팅, 원스톱 고용서비스 제공
 -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노사갈등 완화·조정 등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출연금 교부)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 1,485,817천원 ○ 인건비 : 1,009,566천원 - 원장(1명) : 88,000천원×1명= 88,000천원 - 직원(30명) [43,877,467원(평균임금)×30명] - 국도비 사업 인건비(511,786천원)*= 804,538천원 * 국도비 사업 인건비 : 3개사업 / 511,786천원 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 267,000천원(고용노동부) 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126,600천원(고용노동부) ③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 118,186천원(여성가족부) - 퇴직급여 총당금 : [88,000,000원+(43,877,467원×30명)]×1/12≒ 117,028천원 ○ 경비 : 344,223천원 - 4대 보험료 : 135,036천원 - 급량비 : 8천원×10일×30명×12월= 28,800천원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부담금 : 24,274천원×1식= 24,274천원 - 전화·인터넷 요금 : 1,000천원×12월= 12,000천원 - 우편요금 : 500천원×12월= 6,000천원 - 수도광열비 : 1,000천원×12월= 12,000천원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 9,500천원×12월= 114,000천원 - 회계감사비 : 2,000천원×1회= 2,000천원 - 복합기 임차(3대) : 660천원×12월= 7,920천원 - 각종 소모품 구입 : 183천원×12월≒ 2,193천원 ○ 사업비 : 15,000천원 - 고용패널 조사 및 학술연구대회 : 15,000천원 ○ 성과급 : 117,028천원 - [88,000,000원+(43,877,467원×30명)]×1/12×100%≒ 117,028천원	
	(변경) ■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 1,220,299천원 ○ 인건비 : 1,009,566천원 - 원장(1명) : 88,000천원×1명= 88,000천원 - 직원(30명) [43,877,467원(평균임금)×30명] - 국도비 사업 인건비(511,786천원)*= 804,538천원 * 국도비 사업 인건비 : 3개사업 / 511,786천원 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 267,000천원(고용노동부) 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126,600천원(고용노동부) ③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 118,186천원(여성가족부) - 퇴직급여 총당금 : [88,000,000원+(43,877,467원×30명)]×1/12≒ 117,028천원 ○ 경비 : 344,223천원 - 4대 보험료 : 135,036천원 - 급량비 : 8천원×10일×30명×12월= 28,800천원 -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부담금 : 24,274천원×1식= 24,274천원 - 전화·인터넷 요금 : 1,000천원×12월= 12,000천원 - 우편요금 : 500천원×12월= 6,000천원 - 수도광열비 : 1,000천원×12월= 12,000천원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 9,500천원×12월= 114,000천원 - 회계감사비 : 2,000천원×1회= 2,000천원 - 복합기 임차(3대) : 660천원×12월= 7,920천원 - 각종 소모품 구입 : 183천원×12월≒ 2,193천원 ○ 사업비 : 15,000천원 - 고용패널 조사 및 학술연구대회 : 15,000천원 ○ 성과급 : 117,028천원 - [88,000,000원+(43,877,467원×30명)]×1/12×100%≒ 117,028천원 ○ 2020회계연도 출연금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감 : △265,51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20,299	0	1,485,817	1,220,299	△265,518	0	계속
국 비	0	0	0				
도 비	1,220,299	0	1,485,817	1,220,299	△265,518	0	
시군비	0	0	0				
기 타	0				0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78,686	1,178,686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2020.9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승열 (행)2240	조정원 (행)3402	정상아 (행)3412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성립전)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창출기반구축
	세부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충격이 심화됨에 따라 한시적 공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 긴급 생계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4월 ~ 6개월 이내.
- 예 산 액 : 8,269,766천원(국비 8,003,000, 도비 266,766)
 - ※ 편성 사유 :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부 1차 추경(행안부)
- 사 업 량 : 1,849명(백신접종 지원 443, 생활방역 등 1,406)
- 사업시행방법 : 15개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백신접종 및 생활방역 등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희망근로 지원 사업 : 8,892,224천원(국비8,003,000, 도비 266,766, 시군비622,458) ○ 백신접종 지원 : 2,772,041천원 · 443명 × 8,720원 × 1일 평균 4시간 × 26일 × 6개월 × 1.15(재료비등) ÷ 2,772,041천원 ○ 생활방역 등 : 6,120,183천원 · 1,406명 × 8,720원 × 1일 평균 4시간 × 26일 × 4개월 × 1.2(재료비등) ÷ 6,120,183천원 ※ 참여인원 : 1일 3시간~8시간 참여	국비 90% 도비 3% 시군비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892,224	0	0	8,892,224	8,892,224	0	신규
국 비	8,003,000			8,003,000	8,003,000		국고
도 비	266,766			266,766	266,766		
시군비	622,458			622,458	622,458		
기 타	0				0		

* : 90%, 3%, 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승열 (행) 2240	조정원 (행) 3402	오인선 (행) 3418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산업·경제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추진하여 고용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 보령·아산·서산·당진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7,041,252천원(국비 6,550,000 도비 491,252)
 - ※ 편성사유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 사 업 량 : 3개 프로젝트 8개 세부사업(거버넌스 운영 2, 인력양성 3, 기업지원 3)
 - 프로젝트1 :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맞춤형 거버넌스 운영(2개 세부사업)
 - 프로젝트2 : 탄소기반산업 고도화를 통한 위기산업 재도약(3개 세부사업)
 - 프로젝트3 : 친환경에너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3개 세부사업)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일자리진흥원)
- 사업시행주체 : 일자리진흥원 등 8개 수행기관
- 사업 내용 : 탈석탄, 친환경차 전환 등으로 고용위기에 놓인 에너지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하여 기술 지원·인력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견인
- 지원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7,041,252천원 ('21년 사업비 : 8,187,500천원) (국비 6,550,000천원, 도비 491,252천원, 시비 1,146,248천원) ○ 프로젝트 1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한 지역 일자리 맞춤형 거버넌스 운영 : 2,487,500천원 (국비 1,450,000, 지방비 1,037,500) - 고용안정선제대응지원단 구성·운영(10명) : 1,035,000천원×1삭=1,035,000천원 -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일자리 알선·매칭 등 : 6명) 운영 : 1,452,500천원×1삭=1,452,500천원 ○ 프로젝트 2 탄소기반산업 고도화를 통한 위기산업 재도약 : 2,950,000천원 (국비 2,630,000, 지방비 320,000) - 석탄화력발전소 이전직자 인력재배치사업(아주자동차대학) : 900,000천원×1삭=900,000천원 - 자동차부품산업 인적경쟁력 강화지원사업(선문대) : 740,000천원×1삭=740,000천원 - 위기산업 재도약을 위한 인증지원사업(2개 기관) : 1,310,000천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810,000원×1삭=810,000천원 - 산학융합원 : 500,000천원×1삭=500,000천원 ○ 프로젝트 3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 육성 : 2,750,000천원 (국비 2,470,000, 지방비 280,000) - 수소에너지 및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사업(한기대): 900,000천원×1삭=900,000천원 -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 및 기술지원사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 : 900,000천원×1삭=900,000천원 - 신성장산업분야 신사업 발굴 및 판로지원사업(충남TP) : 950,000천원×1삭=950,000천원	국비 80% 도비 6% 시비 1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937,500	0	0	8,187,500	8,187,500	32,750,000	신규
국 비	32,750,000	0	0	6,550,000	6,550,000	26,200,000	균특
도 비	2,456,260	0	0	491,252	491,252	1,965,008	
시군비	5,731,240	0	0	1,146,248	1,146,248	4,584,992	
기 타	0				0		

* : 80%, 6%, 1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이승열 (행)2240	조정원 (행)3402	정상아 (행)3412



비대면 직업훈련과정 운영 지원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세부사업	비대면 직업훈련 지원 (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존 대면 중심의 직업훈련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수급하기 위해 비대면 직업훈련 방식으로의 혁신 필요
- 사업 위치 :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충남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415)
- 사업 기간 : 2021.07.01. ~ 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
 - ※ 편성 사유 : 충남형 비대면 직업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장비 유지보수 등 지원(중 100,000천원)
- 사 업 량 : 1식(비대면 직업훈련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국가직접지원)
- 사업시행주체 :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
 - ※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기술·신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 개발지원」 공모사업 참여
- 사업 내용 : 비대면 직업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시스템 사용 및 유지관리 비용 지원
- 지원근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비대면 직업훈련 운영 지원 : 100,000천원(도비 지원) ○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 30,600천원 · 5,100천원 × 6개월 = 30,600천원 ○ 데이터센터(IDC), 전용선 사용료 : 27,400천원 · 4,560천원 × 6개월 ≒ 27,400천원 ○ 시스템 관리자 인건비 : 42,000천원 · 3,500천원 × 6개월 × 2명 = 42,000천원	

	■ 비대면 직업훈련 운영 지원 : 399,000천원(국가직접지원) ○ 비대면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 367,000천원 · 원격·협업 프로그램 등 구축비용 = 272,000천원 · 학습자관리 프로그램(LMS) 등 구축비용 = 95,000천원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비용 : 32,000천원 · 개발회의수당, 여비, 원고료, 인쇄비 등 = 32,000천원	
--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099,000	0	0	499,000	499,000	2,600,000	신규
국 비	2,199,000	0	0	399,000	399,000	1,800,000	국가직접지원 (산업인력공단)
도 비	900,000	0	0	100,000	100,000	800,000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 80%(가), 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승열 (행) 2240	권오덕 (행) 3401	김보경 (행) 3417

노동권익센터 운영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동정책 추진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노동존중 사회 구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43,000천원(도비) 【기정액: 615,000천원 + 증: 28,000천원】**
- ※ 증액 사유 :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증 28,000천원)
- 사 업 량 : 노동권익센터 1개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사업 내용 : 도내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 ①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내 노동자의 실태조사
 2. 충청남도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도지사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노동권익센터 운영 : 615,000천원 ○ 인건비 : 279,962천원 ○ 운영비 : 116,207천원 ○ 사업비 : 218,831천원	
	(변경) ■ 노동권익센터 운영 : 643,000천원 ○ 인건비 : 279,962천원 ○ 운영비 : 116,207천원 ○ 사업비 : 246,831천원 - 제2차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 : 28,000천원 · 회의비 : 30명*100천원 * 6회 = 18,000천원 · 회의자료 등 준비비 : 400천원 * 6회 = 2,400천원 · 도민 의견수렴 토론회 : 3,800천원 * 2회 = 7,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43,000	0	615,000	643,000	28,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643,000		615,000	643,000	28,00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00,000	600,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이승열 (행) 2240	김영오 (행) 3403	주 경 (행) 3413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사민정간 협력을 통한 지역 내 고용과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불균형 해소와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노동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0,000천원(국비 65,000, 도비 65,000) 【기정액: 160,000천원 + 감: 30,000천원】
※ 감액 사유 :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공모사업 국비내시금액 확정에 따른 조정(감 30,000천원)
- 사 업 량 : 8개 분야 사업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노사민정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원하청 상생모델 구축, 사업성과보고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문성 강화(실무위원+분과위원 합동회의, 워크숍, 정책간담회)
 -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노사민정 공동선언 및 이행점검단 운영
 - 기초지자체 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 충남 고용·노동리포트 발행, 충남 고용·노동컨퍼런스
 - 충남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회 운영(실무위원회 회의 월1회, 분과위원회(6개 분과, 년 4회))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 제12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도지사는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위탁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 160,000천원 ○ 노사민정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 30,000천원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전문성 강화 : 20,000천원 ○ 충남도 기초지자체 협의회 설치 운영 활성화 지원 : 20,000천원 ○ 협의회 운영 및 추진사업 내용, 성과 콘텐츠 개발 : 20,000천원 ○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 운영 : 17,000천원 ○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 및 이행점검단 운영 : 10,000천원 ○ 충남 고용노동 컨퍼런스 : 10,000천원 ○ 충남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운영 : 29,640천원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위탁수수료 : 3,360천원 (변경) ■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 130,000천원 ○ 노사민정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 20,000천원 ○ 참여플랫폼 구축과 사회적 의제발굴 및 인프라 조성 : 36,000천원 ○ 산재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한 일터 조성 : 20,000천원 ○ 충남 고용노동 리포트 발행 : 10,000천원 ○ 노사분쟁 조정 중재단 운영 : 12,000천원 ○ 충남노사민정협의회 하부협의체 운영 : 3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0,000	0	160,000	130,000	△30,000	0	계속
국 비	65,000		80,000	65,000	△15,000		
도 비	65,000		80,000	65,000	△15,00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 : 50%,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4,000	144,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이승열 (행) 2240	김영오 (행) 3403	이원복 (행) 3414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사안정 및 교류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노동자의 날 행사 지원
- 사업 위치 : 서산시
- 사업 기간 : 2021. 5.(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원 **【기정액: 25,000천원 + 감: 25,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 취소(감 25,000천원)
- 사 업 량 : 근로자의 날 행사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장
- 사업 내용 : 근로자의 날 행사
- 지원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 50,000천원 ○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1식 : 50,000천원 (변경) ■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 0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사업 취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50,000	0	△5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25,000	0	△25,000		
시군비	0		25,000	0	△25,000		
기 타	0				0		

* : 50%,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5,000	25,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이승열 (행) 2240	김영오 (행) 3403	장동호 (행) 2243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정책사업	고용안정
	단위사업	노사복지
	세부사업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동 상담을 통한 도내 노동자들의 애로사항 해소로 노동여건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도 소유 노동자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457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30,000천원(도비) 【기정액: 180,000천원 + 증: 50,000천원】**
- ※ 증액 사유 : 노동자복지회관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한 기능보강(증 50,000천원)
- 사 업 량 : 노동자복지회관 위탁관리 및 노동상담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의장 고석희)
- 사업 내용 : 노동자복지회관 위탁관리 및 노동상담소 운영
- 지원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시행령 제19조,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제4조 (위탁경영) ① 복지회관의 경영은 설치목적에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며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원형을 변경하거나 재산의 감소를 가져올 일체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 180,000천원 ○ 노동자복지회관 유지관리비 : 89,360천원 ○ 노동상담소 인건비 : 84,232천원 ○ 노동상담소 운영비 : 6,408천원	
	(변경) ■ 충남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 230,000천원 ○ 노동자복지회관 유지관리비 : 139,360천원 - 노동자복지회관 냉난방공조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 : 50,000천원 ○ 노동상담소 인건비 : 84,232천원 ○ 노동상담소 운영비 : 6,40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0,000	0	180,000	230,000	5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230,000		180,000	230,000	50,00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80,000	18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이승열 (행) 2240	김영오 (행) 3403	장동호 (행) 2243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 집행잔액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세부사업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 국고 집행 잔액
	통 계 목	국고보조금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분 및 이자발생에 대한 반납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년도(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1,095천원(도비)**
※ 편성 사유 : 2020년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 사 업 량 : 총1개 국고보조사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 국고 집행잔액 : 21,095천원 ○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 국고 집행잔액 = 19,945천원 ○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 컨설팅 사업 국고 집행잔액 이자 = 1,15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1,095	0	0	21,095	21,095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21,095		0	21,095	21,095		
시군비	0				0		
기 타	0				0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일자리노동정책과	일자리정책팀	이승열 (행) 2240	권오덕 (행) 3401	이재원 (행) 2241

소상공기업과



소상공기업과

1.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 50
2. 기업인대상 시상식 52
3.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54
4. 전국여성CEO 경영연수대회 지원 56
5.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 58
6.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60
7.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62
8.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64
9. 지방이양사무 지원(가격표시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66
10.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성립전) 68
11.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70
12.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72
13.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보조(세부사업경정) 74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지자체 소비진작행사	정책사업	중소기업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활성화지원
	세부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 사업 기간 : 2021.11.05. ~ 2021.11.07.(신규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국비 30,000, 도비 70,000)
 - ※ 편성 사유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국 지자체 연계행사임.(2020 추진)
- 사 업 량 : 오프라인 판매전 개최 1회(50개사)
- 사업시행방법 : 출연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연계 오프라인 판매전 개최를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 지원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6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판로지원사업)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 100,000천원(국비 30,000, 도비 70,000) ○ 설비 1식 : 21,340천원(도비) · 전기증설, 전광판, 현장방송 촬영, 생방송 송출, 공연무대, 음향 등 ○ 온·오프라인홍보 : 11,638천원(도비) · 몽골텐트, 유도사인, 현수막, 배너, 홍보리플렛 등 ○ 용역사 비용 : 37,022천원(도비) · 개막식행사, 사회자, 행사운영 스태프, 경품이벤트, 현장관측, 무대공연 등 ○ 설비 1식 : 30,000천원(국비) · 판매부스, 테이블, 게이트, 전기, 조명, 가로등 조명, 발전차량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30,000	0	0	30,000	30,000		
도 비	70,000	0	0	70,000	7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 30%,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조건부추진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정책팀	이성일 (행) 2220	남상길 (행) 3434	마춘정 (행) 3439

기업인대상 시상식	정책사업	중소기업 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중소기업 행사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우수 중소기업 기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
- 사업 기간 : 2021.05.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000천원(도비)**
 - ※ 편성 사유 : 제28회 기업인대상 시상식 개최에 따른 예산 소요비용 편성
- 사 업 량 : 기업인대상 5인 [종합대상 1, 부문별 대상 4(경영·기술·창업·장수)], 우수기업인상 5인이내, 모범근로자 등 13인이내 선정
 - ※ 충남유망중소기업(15개사) 및 모범장수기업(5개사) 인증서 교부식 병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공모 → 시군 접수·추천 → 도 평가·선정)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선정 및 시상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2조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2조(충청남도 기업인대상)

- ① 충청남도 기업인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 등록과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3. 지원기관 임직원
- ② 충청남도 기업인대상 수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 대상 2. 부문별 대상 가. 경영 분야, 나. 기술 분야, 다. 장수 분야, 라. 창업 분야, 3. 우수기업인상
 4. 모범근로자 5. 중소기업 지원 유공자(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 시상식 : 9,000천원 ○ 상탑 : 4,560천원 · 종합대상 : 560천원×1개=560천원 · 부 문 별 : 500천원×4개=2,000천원 · 우 수 : 400천원×5개=2,000천원 ○ 현수막 및 안내표지 : 1,100천원 · 무대 걸개 900천원×1개=900천원 · 안내표지 100천원×2개=2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120천원×9명×1회= 1,080천원 ○ 상장 : 156천원 · 근로자 : 12천원×13개=156천원 ○ 행사비용 임차 : 1,054천원 · 테이블 38천원×17개=646천원 · 의자 3천원×136개=408천원 ○ 행사지원 : 300천원 · 수상자, 중소기업인 등 참석자 다과 : 2천원×150명=3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000			9,000	9,000	0	계속
국 비					0		
도 비	9,000			9,000	9,000		
시군비					0		
기 타					0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000	8,936	64	99.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정책팀	이성일 (행) 2220	남상길 (행) 3434	유재석 (행) 3438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사업	중소기업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기업활동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추진 및 조합원 역량강화를 통한 기업경영 활성화 도모
- 사업 기간 : 2021.06.01. ~ 202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0,000천원(도비)
 - ※ 편성 사유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부지원시책 참여 협조요청(중소벤처기업부)
- 사 업 량 : 도내 26개 조합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 사업시행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사업 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기술사업화지원(공동기술개발, 공동마케팅 등) 및 임직원 역량강화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중소기업협동조합 역량강화 및 기술사업화 지원 : 77,000천원 ○ 협동조합 공동 R&D 및 사업화 지원: 50,000천원 · 공동사업 : 10,000천원 x 3개조합 = 30,000천원 · 협동조합 간 협업지원 : 5,000천원 x 4개조합 = 20,000천원 ○ 협동조합 우수제품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 : 20,000천원 · 우수제품전시회 : 6,000천원 x 1개조합 = 6,000천원 · 조합 홈페이지 개편 및 공동마케팅 : 7,000천원 x 2개조합 = 14,000천원 ○ 협동조합 역량강화화 지원: 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7,000	0	0	77,000	77,000	0	
국 비					0		
도 비	70,000			70,000	70,000		
시군비					0		
기 타	7,000			7000	7,000		자부담 등

* : 91% 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50,000	150,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정책팀	이성일 (행) 2220	남상길 (행) 3434	이주미 (행) 3440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 지원	정책사업	중소기업활성화
	단위사업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전국여성CEO경영연수대회지원(국가직접지원)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 여성기업인 경영연수대회 도내 개최를 통해 충남의 투자환경 및 도내 여성기업 홍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기간 : 2021년 10월중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
※ 편성 사유 : 전국여성CEO 경영연수대회 지원에 따른 예산 소요 비용 편성
- 사 업 량 : 전국여성기업인 800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 사업 내용 : 여성기업 애로사항 상담DESK 운영, 여성기업우수제품 전시,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 운영 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설 2018. 12. 31.>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 <신설 2018. 12. 31.>
 3.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
 4.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국여성CEO 경영연수 지원 : 260,000천원 ○ 초청강연 및 전문가 수당 등 : 17,200천원 ○ 인쇄비 및 행사장설치 등: 82,800천원 · 교재인쇄, 명찰, 배너, 경품 등 : 18,000천원 · 메인행사장 설치, 홍보부스 설치, 체험샘플구입비 등 : 50,800천원 · 행사위탁수수료 등 : 14,000천원 ○ 객실비 및 식비 등 부대비용 :160,000천원 · 객실비 : 120,000 × 375실 = 45,000천원 · 1일차 중식 : 25,000 × 800명 = 20,000천원 · 2일차 조식 : 25,000 × 800명 = 20,000천원 · 1일차 만찬 : 55,000 × 800명 = 44,000천원 · 참가자 기념품 : 사과즙 25,000 × 800명 = 20,000천원 · 봉사자 단체복 : 130,000 × 60명 = 7,800천원 · 관광지 및 온천입장료 3,2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60,000	0	0	260,000	260,000	0	신규
국 비	40,000			40,000	40,000		국가직접지원
도 비	100,000			100,000	100,000		
시군비	20,000			20,000	20,000		
기 타	100,000			100,000	100,000		자부담 등

* : 12%, 42%, 5%, 4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정책팀	이성일 (행) 2220	남상길 (행) 3434	이주미 (행) 3440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	정책사업	지역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
	단위사업	벤처기업 육성
	세부사업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일환으로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추진중인 그린스타트업 타운(본관)의 조성 전 시범사업을 통해 조기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사업 위치 :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오렌지상가 10층(그린스타트업 타운 직선 약 400m)
- 사업 기간 : 2021.07.01. ~ 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16,000천원(도비)**
- ※ 편성 사유 : 중기부 그린스타트업 타운 공모 선정('20.9.), 사업수행협약('20.11.)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
- 사 업 량 : 창업지원금(20팀), 전문가 상담 등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입주시설, 공유오피스 등 제공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창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지원사업)

-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4.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 및 특례보증 등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도지사는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업지원시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그린스타트업 타운 시범사업 : 290,000천원(도비 116,000천원, 시비 174,000천원) ○ 수요 맞춤형 창업지원금 : 10,000천원 × 20팀 = 200,000천원 ○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코칭 지원 : 10개 분야 × 100천원 × 50회 = 50,000천원 ○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40,000천원 -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협업비즈니스 모델 발굴 내외부 네트워킹 : 2,500천원 × 6회 = 15,000천원 - 투자설명회(IR) :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 별관 운영비(임대료, 인건비 등) 시비 별도 편성(12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90,000	0	0	290,000	29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16,000	0	0	116,000	116,000	0	
시군비	174,000	0	0	174,000	174,000	0	
기 타	0	0	0	0	0	0	

* : 40%, 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창업기반팀	이성일 (행) 2220	안미선 (행) 3441	손아영 (행) 3446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정책사업	중소기업 육성
단위사업	금융 및 기술 지원
세부사업	충남신용보증재단지원 (국비보조금)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도+시군)의 지역 신용 보증 출연금에 대한 30%의 매칭 출연금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 12.(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3,677,000천원(국비)**
 - ※ 편성 사유 : '20. 7월 ~ '21년 본예산 자치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국비 30% 매칭 출연
- 사 업 량 : 3,677,000천원
- 사업시행방법 : 충남신용보증재단
- 사업시행주체 : 충남신용보증재단
- 사업 내용 : 자치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국비 매칭 출연(30%)
- 지 원 근 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 3,677,000천원(지자체 출연에 대한 국비보조금/중소벤처기업부)

↳ ① 3,285,000천원(2차 교부액) + ② 392,000천원(3차 교부액)

① 지역신용보증재단 2차 교부액 = 3,285,000천원(지자체 출연금의 30%)

- 총 도+시·군 출연금('21년 본예산) : 10,950,000천원 × 30% = 3,285,000천원

· 충청남도 출연금	1,000,000천원	· 당진시 출연금	700,000천원
· 천안시 출연금	5,000,000천원	· 금산군 출연금	300,000천원
· 공주시 출연금	500,000천원	· 부여군 출연금	300,000천원
· 보령시 출연금	600,000천원	· 서천군 출연금	400,000천원
· 아산시 출연금	500,000천원	· 청양군 출연금	150,000천원
· 서산시 출연금	300,000천원	· 홍성군 출연금	200,000천원
· 논산시 출연금	300,000천원	· 예산군 출연금	300,000천원
· 계룡시 출연금	200,000천원	· 태안군 출연금	200,000천원

② 지역신용보증재단 3차 교부 = 392,000천원

- 13,190,000천원(A+B) × 3% = 392,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액	교부잔액	매칭요율	비고
합 계	-	3,677,000	-	
1차 (A)	2,240,000 ('20년 추경예산)	672,000	30%	2020.11월 교부완료
2차 (B)	10,950,000 ('21년 본예산)	3,285,000	30%	2021년 교부예정
3차 (A+B)	13,190,000	392,000	3%	

산출 기초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77,000	0	0	3,677,000	3,677,000	0	신규
국 비	3,677,000		0	3,677,000	3,677,000		부담금
도 비	0		0	0	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2021.4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기업금융팀	이성일 (행) 2220	윤태노 (행) 3435	정재하 (행) 3442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지원하여 매출 및 고객 증대 도모
- 사업 위치 :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15,700천원(도비) 【기정액: 282,200천원 + 증: 33,500천원】**
※ 증액 사유 : 타 예산으로 전용(42,000천원) 및 신규사업(75,500천원)을 반영하여 도비 증액(33,500천원)
- 사 업 량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등 공모사업 선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 대상 : ‘법’에서 정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시설
- 사업 내용 : 지역특화상품 개발, 상인조직 역량강화, 핵심점포·청년상인 육성 등
- 지원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조례 제6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청년상인 육성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 940,660천원 ○ 전통시장 창업지원 : 25,000천원 × 10개소 = 250,000천원 ○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 : 50,000천원 × 3개소 = 150,000천원 ○ 예비특성화시장 육성 : 20,000천원 × 2개소 = 40,000천원 ○ 상인역량강화 지원 : 3,000천원 × 10개소 = 30,000천원 ○ 스타점포 육성 : 5,000천원 × 40명 = 200,000천원 ○ 충남형 특화시장 육성 : 100,000천원 × 2개소 = 200,000천원 ○ 실태조사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등 : 70,660천원 (변경) ■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 937,500천원 ○ 전통시장 창업지원 : 25,000천원 × 10개소 = 250,000천원 ○ 특화시장 사후관리 지원 : 50,000천원 × 3개소 = 150,000천원 ○ 특화거리 조성(먹거리, 테마거리, 공동브랜드 상품개발등) 특성화시장 조성사업 지원 : 100,000천원 × 2곳 = 200,000천원 ○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 200,000천원 ○ 천안시 성정시장 기능보강 사업(아케이드 교체) : 46,000천원 × 1식 = 46,000천원 ○ 금산군 현대화사업 공동기반시설교체(엘리베이터 교체) : 67,500천원 × 1식 = 67,500천원 ○ 홍성군 5일 전통시장 기능보강 사업(단상, 음향시설 교체) : 24,000천원 × 1식 = 2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37,500		940,660	937,500	△3,160		계속
국 비	0						
도 비	315,700		282,200	315,700	33,500		
시군비	525,050		611,430	525,050	△86,380		
기 타	96,750		47,030	96,750	49,720		자부담 등

* : 34%, 56%,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	532,936	532,936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성일 (행) 2220	염성분 (행) 3436	심우혁 (행) 3447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정책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소상공인 육성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코로나 19로 인한 외식업 비대면 서비스 방식 변화에 따라 충남형 배달앱을 도입하여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절감과 매출증대 효과 기대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50(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
 - ※ 편성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한 외식업 비대면 서비스방식 변화 대응에 따라 배달앱 도입 및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예산 편성
- 사 업 량 : 홍보비, 쿠폰비(마케팅비) 24,500명분 지원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 사업 내용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도, 민간업체, 민간협회와 협약 하에 수수료 절감을 위한 홍보비 및 쿠폰비 등을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지원 :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경영안정 등 지원 :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
3. 폐업 지원 : 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총사업비 : 100,000천원(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사업 지원) ○ 소비자 인센티브 및 홍보 지원 : 100,000천원 · 쿠폰 지원 － 가입시 축하 쿠폰 : 4,000원 × 15,000명 = 60,000천원 － 적립포인트 : 4,000원 × 9,500명 = 38,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 200,000 × 8명 × 1일 × 1회 = 1,600천원 · 홍보현수막 지원 : 80,000 × 5장 × 1회 = 4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0	100,000	10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100,000	0	0	100,000	100,000		
시군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성일 (행) 2220	염성분 (행) 3436	심우혁 (행) 3447

지방이양사무 지원 (가격표시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격표시제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지원(인건비 등)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7,000천원(균특)**
 - ※ 편성 사유: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 사 업 량 : 15개 시·군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건수(2021. 3. 31.기준 0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가격표시제 위반 과태료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지원(접수, 처리비용 등)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자치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이양사무 지원사업(가격표시제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 27,000천원 ○ 0.5명(소요인력) = 27,000천원 * 소요인력 산정 : 자치분권위원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전년도본예산(B)	증감(A-B)		
계	27,000	0	0	0	27,000	0	신규
국 비	27,000	0	0	0	27,000	0	균특
도 비							
시군비							
기 타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집행률(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비사전심사	물품정수취득	홍보물사전심의	공공기관출연금의회의결	신규 행사성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소상공기업과	지영업지원팀	이성일 (행) 2220	염성분 (행) 3436	이영재 (행) 3444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성립전)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성립전)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화재알림시설 설치
- 사업 위치 :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다년도 계속)
- 예 산 액 : **49,280천원(국비) 【기정액: 16,240천원 + 증: 33,040천원】**
- ※ 증액 사유 : 중소벤처기업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추가선정 됨(청양)
- 사 업 량 : 2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청양군
- 사업 내용 : 전통시장 내 화재알림시설 설치
- 지원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조례 제6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청년상인 육성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70,400천원(국 70%, 시군 30%) ○ 천안중앙시장 : 29점포 × 800,000원 = 23,200,000원 ○ 청양정산시장 : 59점포 × 800,000원 = 47,2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0,400	0	23,200	70,400	47,200	0	계속
국 비	49,280		16,240	49,280	33,040		기금
도 비	0		0		0		
시군비	21,120		6,960	21,120	14,160		
기 타	0		0	0	0		

* : 70%,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40,723	940,723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성일 (행) 2220	염성분 (행) 3436	김현민 (행) 3448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후전선 정비
- 사업 위치 : 전통시장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다년도 계속)
- 예 산 액 : 828,236천원(국비) 【기정액: 734,486천원 + 증: 93,750천원】
- ※ 증액 사유 : 중소벤처기업부 노후전선정비사업 추가 선정 및 사업금액변경(금산, 청양)
- 사 업 량 : 8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외 7개 시군
- 사업 내용 : 전통시장 내 노후전선 정비
- 지원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조례 제6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청년상인 육성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 1,656,472천원(국 50%, 시군 40%, 자부담 10%) ○ 천안중앙시장 : 96점포 × 2,500,000원 = 240,000,000원 ○ 천안역전시장 : 49점포 × 약2,500,000원 = 121,472,000원 ○ 보령대천항수산물센터 : 45점포 × 2,500,000원 = 112,500,000원 ○ 금산수삼센터 : 72점포 × 2,500,000원 = 180,000,000원 ○ 홍성광천전통시장 : 135점포 × 2,500,000원 = 337,500,000원 ○ 홍성광천원동시장 : 118점포 × 2,500,000원 = 295,000,000원 ○ 예산상설시장 : 45점포 × 2,500,000원 = 112,500,000원 ○ 청양전통시장 : 103점포 × 2,500,000원 = 257,5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56,472	0	1,468,972	1,656,472	187,500	0	계속
국 비	828,236		734,486	828,236	93,75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662,589		587,589	662,589	75,000		
기 타	165,647		146,897	165,647	18,750		자부담

* : 50%, 40%,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30,000	230,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성일 (행) 2220	염성분 (행) 3436	김현민 (행) 3448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 건립(신규·증설·복합화) 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
- 사업 위치 :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다년도 계속)
- 예 산 액 : **3,147,660천원(국비) 【기정액:3,860,160천원 + 감:712,500천원】**
 - ※ 감액 사유 :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가 선정 및 사업금액변경(당진, 홍성, 태안)
- 사 업 량 : 전통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전통시장 내 주차장 건립 및 개보수
- 지원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조례 제6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청년상인 육성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 5,246,100천원(국비 3,147,660천원, 시군비 2,098,440천원) ○ 보령중앙시장 : 320,000,000원(건축비) × 1식 = 320,000,000원 ○ 서산동부전통시장 : 4,700,000,000원(건축비) × 1식 = 4,700,000,000원 ○ 태안안면도수산시장 : 60,000,000원(개보수비용) × 1식 = 60,000,000원 ○ 홍성광천전통시장 : 22,700,000원(개보수비용) × 1식 = 22,700,000원 ○ 홍성전통시장 : 143,400,000원(개보수비용) × 1식 = 143,4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246,100	0	6,433,600	5,246,100	△1,187,500	0	신규
국 비	3,147,660		3,860,160	3,147,660	△712,5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2,098,440		2,573,440	2,098,440	△475,000		
기 타	0		0	0	0		

* : 60%,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성일 (행) 2220	염성분 (행) 3436	김현민 (행) 3448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보조(세부사업경정)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
	세부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용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신규·증설·복합화)이 어려운 시장의 대체 주차장 이용료 보조
- 사업 위치 :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다년도 계속)
- 예 산 액 : 58,642천원(국비) 【기정액: 58,642천원 + 증감: 0천원】 * 세부사업 경정
 - ※ 세부사업 경정 사유 : 국비매칭을 위해 세부사업‘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서 세부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용보조)’로 별도 분리
- 사업 량 : 전통시장(상점가)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법’에 정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시설
- 지원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조례 제6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청년상인 육성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보조 : 97,737천원(국비 58,642천원, 시군비 39,095천원) ○ 홍성명동상점가 : 97,737,000원 × 1식 = 97,737,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7,737	0	0	97,737	97,737	0	세부사업 경정
국 비	58,642		0	58,642	58,642		기금
도 비	0		0	0	0		
시군비	39,095		0	39,095	39,095		
기 타	0		0	0	0		

* : 60%, 4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성일 (행) 2220	염성분 (행) 3436	김현민 (행) 3448

투 자 입 지 과



투자입지과

1. 국내복귀 투자 보조	80
---------------------	----

국내복귀 투자 보조	정책사업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단위사업	내실 있는 기업 지원
	세부사업	국내복귀 투자 보조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내복귀기업 유치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해외진출 우수기업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촉진
- 사업 위치 : 도내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301,125천원(국비 8,829,530 도비 1,471,595)
- ※ 편성 사유 : S社 24억원(지급확정) 및 P社 79억원(지급검토) 국내복귀 투자를 위한 현금 지원
- 사 업 량 : 분기별(4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국비 매칭 사업으로서, 충청남도 내 투자하는 국내복귀기업 보조
- 지원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8조 ~ 제12조
제10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하며,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쳐 "투자보조금"이라 한다) 및 이전비용의 일부(이하 "이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비투자금액 중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5조~제 8조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는 시장·군수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내복귀 투자 보조 : 11,772,720천원(국비 8,829,530, 도비 1,471,595, 시군비 1,471,595) ○ (국비) 8,829,530천원 / (도비) 1,471,595천원 / (시군비) 1,471,595천원			
	구 분	매칭비율 (국:도:시군)	국내복귀기업 지원비율 (대·중견·중소 공통)	
	수도권인접지역 (천안, 아산, 당진)	(45 : 16.5 : 38.5)	입지, 설비투자(21%)	
	일반지역 (보령, 서산, 논산, 계룡, 홍성, 태안)	(65 : 14 : 21)	입지, 설비투자(24%)	
	지원우대지역 (공주,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태안기업도지)	(75 : 12.5 : 12.5)	입지, 설비투자(3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 등 (소재부품장비기업 중 핵심전략품목)	(75 : 12.5 : 12.5)	입지, 설비투자(4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772,720		0	11,772,720	11,772,720	0	신규
국 비	8,829,530		0	8,829,530	8,829,530		부담금, 군특
도 비	1,471,595		0	1,471,595	1,471,595		
시군비	1,471,595		0	1,471,595	1,471,595		
기 타							

* : 45~75%, 12.5~16.5%, 12.5~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투자입지과	기업유치팀	이영석 (행) 2230	이희철 (행) 3373	이향수 (행) 3389

국 제 통 상 과



국제 통상과

1.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 86
2.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국가직접지원) 88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	정책사업	수출기반 확대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상관련 행사 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매년 정부에서 지정한 무역의 날(12. 5.)을 맞이하여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도내 수출 중소기업 및 수출유관기관 종사자의 수출의욕 고취를 위한 표창 시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000천원【기정액: 0천원 + 증: 5,000천원】**
※ 증액 사유 : 정부포상 전수와 도내 중소기업 수출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누락분 반영
- 사 업 량 : 무역의날 기념 시상식 1회
- 사업시행방법 : 충청남도 및 수출유관기관(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공동 추진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정부포상 전수(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충청남도 수출탑 및 표창패 시상식 운영
- 지원 근거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 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수출관련 기관·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각종 통상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등 수출진흥을 위하여 수출관련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무역인의 날 운영
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및 워크숍 등 교육 운영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역의 날 기념 시상식 : 5,000천원 ○ 시상식 행사 추진 관련 : 4,391천원 · 시상식 도우미 및 행사 인력 : 8명 × 220천원 = 1,760천원 · 행사 공연비(현악 5중주) : 1회 × 1,500천원 = 1,500천원 · 기타 행사장 잡비(현수막, X배너, 데코비 등) : 1,131천원 ○ 기타 행사 운영비 : 609천원 · 사회 진행비 : 1명 × 200천원(시간당) × 2시간 = 400천원 · 수출탑 운송료 : 1회(대전 → 충남도) = 209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000	0	0	5,000	5,000	0	
도 비	5,000	0	0	5,000	5,000		

* :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000	5,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통상지원팀	홍만표 (행) 2250	정현섭 (행) 3344	이선희 (행) 3360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가)
	통 계 목	(307-02)

□ 사업개요

대외무역법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 20,000천원 ○ 현장 실습비 : 10,000천원 × 2개대학 = 20,000천원 · 전시회 참가경비 142,860×70명 ≒ 10,000천원 · 전시회 부스 임차료 500,000원 × 12개 = 6,000천원 · 마케팅 대행료 333,330원 × 12개 ≒ 4,000천원	순천향대 남서울대
	(변경) ■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 10,000천원 ○ 현장 실습비 : 10,000천원 × 1개대학 = 10,000천원 · 전시회 참가경비 142,860원 × 35명 ≒ 5,000천원 · 전시회 부스 임차료 500,000원 × 6개 = 3,000천원 · 마케팅 대행료 333,330원 × 6개 ≒ 2,000천원	순천향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6,000	0	300,000	136,000	△164,000	0	
국 비	126,000		280,000	126,000	△154,000		국가직접지원
도 비	10,000		20,000	10,000	△1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 93%, 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0	2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국제통상과	통상지원팀	홍만표 (행) 2250	정현섭 (행) 3344	이해수 (행) 2252



특 별 회 계



소상공기업과(특별회계)



소상공기업과

1.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96
------------------------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부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서천군 내 5개 전통시장 및 충절로 42 일원 상권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4.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0천원(도비) 【기정액 80,000천원 + 증: 20,000천원】**
- ※ 증액 사유 :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존 신청액 기준 증액
- 사 업 량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 스페이스 보행자 마케팅 기능 강화,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조례 제6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청년상인 육성사업	
4. 화재위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설보완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 180,000천원 ○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1식 : 80,000천원 ○ 시장홍보 안내판 설치 1식 : 20,000천원 ○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1식 : 50,000천원 ○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1식 : 30,000천원	
	(변경) ■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 200,000천원 ○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1식 : 100,000천원 ○ 시장홍보 안내판 설치 1식 : 20,000천원 ○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1식 : 50,000천원 ○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1식 : 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800,000	0	180,000	200,000	20,000	5,600,000	신규
국 비	0	-	-	-	0	-	
도 비	2,900,000	-	80,000	100,000	20,000	2,800,000	
시군비	2,900,000	-	100,000	100,000	0	2,800,000	
기 타	0	-	-		0	-	

* : 50%,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	해	당	없	음		신규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서천군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자영업지원팀	이성일 (행) 2220	염성분 (행) 3436	김현민 (행) 3448